보험금 청구서

보험회사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금 청구 관련 처리를 위해서는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하시는 일		운전여부	☐ 예 ☐ 아니오	휴대전화	
의료수급권자 여부	☐ 예 ☐ 아니오 ※ 의료수급권자에 해당되는 경우, 실손 보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 수령인 (수령인과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중복된 항목은 상동으로 작성 가능)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		유선전화		피보험자와의 관계	
주소				정보변경	☐ 신청 ☐ 미신청
수령방법	☐ 송금 ☐ 방문	E-Mail			
입금받으실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	

청구내용 및 사고내용

청구유형	☐ 질병 [신체 내부요인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 ☐ 재해 [급격·우연한 외부사고로 다친 경우]			
청구사유	☐ 사망 ☐ 장해 ☐ 진단 ☐ 수술 ☐ 입원 ☐ 통원 ☐ 실손입원 ☐ 실손통원 ☐ 기타			
사고내용 (질병제외)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경위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처리여부	☐ 예 ☐ 아니오
실손통원처방 의료비청구시	병명	1. 2.	실손타사 가입여부	보험회사 가입건수
청구구분	☐ 일시금 ☐ 지분 ☐ 채권 ☐ 선지급 ☐ 가지급		일부청구	☐ 예 ☐ 아니오 일부청구사유:

※ 확인된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에 정상 유지 중인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일부보험금 항목만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일부청구 항목에 사유기재)
※ 세부 항목들을 상세히 체크·기재시 보다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심사과정 안내신청

진행과정안내	☐ 신청 ☐ 미신청	보험금처리'병명'안내	☐ 신청 ※ 피보험자에게 발송 ☐ 미신청
담당 FP 통지	☐ 신청 ☐ 미신청	지급내역안내	☐ 알림톡 또는 LMS ☐ E-Mail ☐ 우편발송 ☐ 미신청

※ 진행과정, 보험금처리'병명' 안내를 신청하신 경우, 알림톡 또는 LMS로 안내드립니다.
※ 담당 FP통지를 선택하신 경우, 고객님의 담당 FP에게 심사과정이 안내됩니다. 단, FP 대리청구의 경우, 대리청구 FP에게 심사과정이 안내됩니다.
※ 피보험자의 민감정보는 피보험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수 안내사항 및 확인서명 (확인란에 체크 부탁드립니다)

보험업법 제 95조 2(설명의무 등) 제 3항, 제4항 등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설명을 듣고, 보험금 지급 과정의 단계별 진행 사항을 위의 방법으로 안내받는 것과 [별지]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동의 합니다. ① 청구하신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단,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지급 지연시 신청하신 안내방법에 따라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보험금 지급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 중 일부는 [한화손해사정㈜] 등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피해과장, 서류 위·변조)는 범죄로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확인(필수)
작성일자	년 월 일	수령인 성명	서명(인)

대리청구인 작성란

성명	수령인과의 관계	주민번호(사업자번호 또는 사원번호)	연락처

※ 우편 청구(등기) 주소: [0451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서울상공회의소 6층 **한화생명** 사고보험금 우편청구 심사담당자 (앞)
※ 우편청구시 수령인 신분증 사본 첨부(고객확인 의무 이행)

2025 – 08

한화생명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1/4)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손해사정 또는 의료자문 포함) 등 –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금융거래 관련 업무 – 고객이력관리, 증빙서류 보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②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③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한다.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증권번호, 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2/4)

2-1. 제공에 관한 사항(국내 제공)

제공받는 자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보험요율산출기관, 수사기관(검찰청, 경찰청 등) 또는 법원 등 법령상 업무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보험회사 등 : 생명·손해보험회사, 국내 재보험사(외국 재보험사의 국내 지점 포함),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계약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자, 계약자, 보험금수익자(수령인) – 보험협회 등 : 생명·손해보험협회 – 의료기관 등 :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 의사, 변호사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재)보험금 청구 – 금융거래기관 : 금융거래 업무 – 계약관계자 : 손해사정내용 관련 정보 제공 – 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업무지원(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서비스 등) – 의료기관 등 : 의료심사 및 자문, 소견서, 진료기록 열람, 법률자문 및 소송 관련 업무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 본 동의서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외국 재보험사의 국내 지점이 재보험금 청구 등 지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국외 제3자(본점 및 계열사 포함)에 민감정보를 포함한 귀하의 정보(고유식별정보는 제외)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피보험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국내거소신고번호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증권번호, 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hanwhalife.com]에서 확인 가능)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3/4)

2-2. 제공에 관한 사항(국외 제공)

제공받는 자	– 국외 재보험사 (재(재)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국외 재보험사로 당사 홈페이지 [www.hanwhalife.com]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
제공받는 국가	– 국외 재보험사의 소재국가 (당사 홈페이지 www.hanwhalife.com에서 확인 가능)
제공시기	– 재(재)보험금 청구 시점
제공방법	– 온라인 전송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재(재)보험금 지급·심사 ※ 국내 소재 재보험사가 재재보험금 청구를 위해 국외 재보험사로 귀하의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1) 1개사 이상의 국외 재보험사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국내 소재 재보험사가 재재보험 계약 체결을 위해 국외 재보험사에 귀하의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 당사(원수보험사)가 국내 소재 재보험사를 대신하여 동의를 징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국외 재보험사의 구체적인 명칭·소재국·연락처는 당사 홈페이지 www.hanwhalif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귀하는 본 동의서 "동의하지 않음"란을 선택하거나 당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에 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국외 이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위 민감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신용거래정보	증권번호,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등)	

[필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4/4)

3.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조회 목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 생명·손해보험협회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사고·보험사기 조사 및 보험금지급·심사, 법령에 의한 업무수행 등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해당 보험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조회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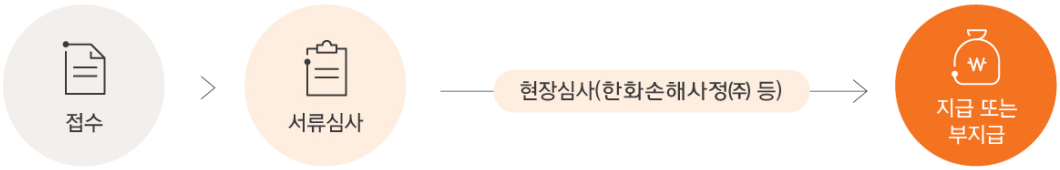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민감정보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위 민감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신용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증권번호, 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피보험자 성명	서명(인)	**친권자 성명 (후견인)**	서명(인)
수령인 성명	서명(인)	**확인일**	년 월 일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가 작성 후 서명이 필요하며,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본인의 성명 작성 및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피보험자외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란만 서명하셔도 무방합니다.
※ 친권자(후견인)란은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친권자(후견인)가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1/2)

보험금 심사절차 안내



- 보험업 감독규정 中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및 질병정보 등에 대한 수집·조사·조회 및 제공·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심사(조사)전문회사인 **한화손해사정(주)** 등은 보험사고 심사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한화생명**에 고객님께서 청구하신 보험금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며,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담당자가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에 의하여 병원 또는 관공서 등 확인 시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임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타 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른 보험사에 청구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심사

-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거나, 장해·진단 급부 등 청구시 의료심사 또는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한화생명**이 부담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안내

- 고객님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 법인에게 현장 심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한화생명**이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한화생명**이 부담합니다.
  계약자 또한 별도로 손해사정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선임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자 등 부담	보험회사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때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별도로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 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알리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❶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 관련 법규(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등)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❷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손해사정 업무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법기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처벌 또는 제재를 통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2회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경고(시정요구 등)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❸ 손해사정사가 선임 요청일 기준 최근 5년 내 감독규정 제9-16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요구하거나 이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❹ 해당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보험사기 인지 보고가 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❺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보험금에 대한 화해·중재·합의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속한 사실 또는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예시)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금지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화해·중재 등),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에 따른 금지행위(보험금에 대한 합의·절충 등)

❻ 보험회사가 선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게 평가를 위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손해사정사가 선임 동의 기한까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❼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가 정한 보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경우

❽ 기 청구하여 처리 종결한 사안을 동일한 사유로 재 청구한 경우(이의 신청 포함)

보험금 청구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2/2)

본인부담금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분위(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약관상 보장 제외 대상이며,가입하신 약관에 따라 회사는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입니다.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및 부지급 안내	•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한화생명** 홈페이지, 콜센터(1588-6363), 고객센터, 심사처리담당자 등에게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 상법 제 662조(소멸시효)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 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 2015.3.12일 이전 청구사유발생 건은 2년)
분쟁 조정 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 **한화생명**의 보험금 지급 처리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거나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먼저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타	• 만일 보험금 청구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한화생명**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또는 콜센터(1588-6363)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청구시 안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명보험협회 : http://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 : http://www.knia.or.kr)

한화생명